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[중요]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(예비군)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

1. 관련

- 가. 국방부 예비전력과-3407(2022.8.18.) 「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(예비군)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」
나. 예비군법 제10조의2 및 병역법 제74의3

2. 위 호와 관련, 국방부에서는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(예비군)에 대해 학업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 등 운영 시 학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.

※ (관련 보도) 일부 대학에서 **예비군훈련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 처리하거나, 예비군훈련 기간에 듣지 못한 강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어 강의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등 불이익 사례 발생**

3. 최근 일부 대학에서 **예비군훈련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등의 사례가 보도된 바 관련 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, 각 대학에서는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**국방의무**를 이행하는 **예비군(학생)**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**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**를 받지 않도록 **대학 차원의 철저한 지도 및 세심한 주의**를 당부드립니다.**

<예비군법> * 5~6년차 지역예비군훈련에 적용

- 제10조의2(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) : 고등학교 이상의 **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.**
- 제15조(별칙) 제8항 :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병역법> * 1~4년차 동원훈련에 적용

- 제74조의3(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) : 고등학교 이상의 **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(이하 "병력동원소집등"이라 한다)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.**
 1.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, 병력동원훈련소집,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
 2.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(이하 "예비군대체복무"라 한다) 소집
- 제93조의2 (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) : **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**

끝.

교 육 부 장

고등교육기관전체, 국방부장관(예비전력과장)



주무관

임정화

행정사무관

나대일

대학 학사 제도
과장

전결 2022.11.8.
김태경

협조자

시행 대학 학사 제도 과-12336 ((2022.11.8.)) 접수 ()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/ www.moe.go.kr
전화 044-203-6616 전송 044-203-6485 / ljh@moe.go.kr / 비공개